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459호(號) 1928년(昭和3) 7월 10일 화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266호(號)

1927(昭和 2)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33호(號) 시베리아(Siberia) 경유(經由) 유럽·아시아[歐亞] 여객 및 수하물 연락운수규칙[旅客及手荷物連絡運輸規則] 중 1928(昭和 3)년 7월 15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1928(昭和 3)년 7월 10일 조선총독(朝鮮總督)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제4조(條) 전조(前條)의 취급역(取扱驛) 간(間)에 있어서 경로(徑路)는 아래[左]와 같이 함.

일본국유철도(日本國有鐵道) 및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취급역(取扱驛)	외국측(外國側) 취급역(取扱驛)	경 로(徑路)	기 사(記事)
각(各) 취급역	하바롭스크(Khabarovsk) 블라고베셴스크(Blagoveschchensk) 치타(Chita) 이르쿠츠크(Irkutsk) 옴스크(Omsk) 스베르들로프스크(Sverdlovsk)[1] 모스크바(Moskva) 레닌그라드(Lenigrad) 하르키우(Kharkiv) 탈린(Tallinn) 리가(Rīga) 스토르브체? 바르샤바(Warsaw)	하얼빈(Harbin) 경유(經由)	조선총독부철도 취급역과 외국측 취급역 중「하바롭스크」및「블라고베셴스크」와의 구간(區間)은 하얼빈, 포그라니치나야(Pogranichnaya) 경유의 경우에 한(限)함.
	로즈(Rose) 프라하(Prague) 마리앙바드(Marienbad) 카를스바트(Karlsbad)[2] 비엔나(Vienna)	하얼빈, 바르샤바 경유	
	카우나스((Kaunas) 키예프(Kiev) 호이니체(Chojnice) 단치히(Danzig)	하얼빈, 리가 경유	
	베를린(Berlin) 함부르크((Hamburg) 알토나(Altona) 쾰른(Köln) 브뤼셀(Brussels) 리에주(Liège) 오스텐트(Ostend) 파리(Paris) 칼레(Calais)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경유	
	베네치아(Venezia) 로마(Rome) 밀라노(Milano) 제노바(Genova)	1. 하얼빈, 바르샤바, 비엔나 경유 2.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베를린, 브레너 경유	

1) 역자: 구칭은 에카테린부르크(Ekaterinburg)이다.

비고(備考) 일본국유철도 취급역(日本國有鐵道取扱驛)과 외국측 취급역(外國側取扱驛)과의 구간에는 극동(極東)방면에 있어서 부산(釜山)·하얼빈 경유, 다롄[大連]·하얼빈 경유, 블라디보스토크·하얼빈 경유,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 경유의 4경로(徑路)가 있음.

제8조(條)의2 베를린(Berlin)보다 먼 지역의 취급역에 대하여는 바르샤바 경유, 리가 경유의 2경로(徑路)에 공통(共通)하는 승차권(乘車券)을 발행함.

전항(前項)의 승차권을 소지(所持)한 여객은 바르샤바 경유, 리가 경유의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임의(任意)로 함.

제12조(條) 여객(旅客)은 하기[左記]에 의해 도중(途中) 하차(下車)를 하는 것을 득(得)함.

철도명(鐵道名)	하차회수(下車回數)	하차역(下車驛)	증명(證明) 기타(其他) 수속(手續)
일본국유철도(日本國有鐵道)	제한(制限) 없음	제한 없음	하차 때 즉시 권편(券片)에 하차인(下車印)의 압날(捺印)을 받을 것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동(同)	동(同)	동(同)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	동(同)	동(同)	동(同)
동지철도(東支鐵道)	동(同)	동(同)	하차역의 증인(證引)을 받을 것
소비에트철도(Soviet鐵道)	동(同)	동(同)	하등(何等)의 수속(手續)을 요(要)하지 아니함
에스토니아(Estonia)의 철도	동(同)	동(同)	승계역(承繼驛)에서는 하등의 수속을 요(要)하지 아니함. 기타(其他) 역(驛)에 있어서는 하차 후 즉시 역장(驛長)의 승인 도장을 받고 승차 때 승차권(乘車券)을 개표소(改票所)에 정시(呈示)하여 열차번호의 기입을 받을 것
라트비아(Latvia)의 철도	동(同)	동(同)	동(同)
리투아니아(Lituania)의 철도	동(同)	동(同)	동(同)
폴란드(Poland)의 철도	권면기재역(券面記載驛) 외(外) 1회(回)	동(同)	권편면(券片面)에 기재한 지정역(指定驛)에서는 하등(何等)의 수속을 요(要)하지 아니함. 기타(其他) 역(驛)에서는 권편(券片)에 증명을 받을 것
독일(獨逸)의 철도	제한 없음	동(同)	하등(何等)의 수속(手續)을 요(要)하지 아니함
벨기에(Belgium)의 철도	동(同)	도중(途中) 하차역(下車驛)에 한(限)함	동(同)
프랑스(France)의 철도	동(同)	제한 없음	하차 후 즉시 당해역(當該驛) 도장의 압날(押捺)을 받을 것
체코슬로바키아(Checoslovakia)의 철도	권면기재역(券面記載驛) 외(外) 1회(回)	동(同)	권편면(券片面)에 기재한 지정역(指定驛)에서는 하등(何等)의 수속을 요(要)하지 아니함. 기타(其他) 역(驛)에서는 하차의 증명을 받을 것
오스트리아(Austria)의 철도	권면기재역(券面記載驛) 외(外) 4회(回)	동(同)	권편면(券片面)에 기재한 지정역(指定驛)에서는 하등(何等)의 수속을 요(要)하지 아니함. 기타(其他) 역(驛)에서는 하차의 증명을 받을 것
이탈리아(Italia)의 철도	제한 없음	동(同)	하등(何等)의 수속(手續)을 요(要)하지 아니함

하차(下車)의 증명(證明)을 요(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명을 받지 아니한 때는 하차역이 속(屬)한 구간에 대한 권편(券片)은 앞으로 가야할 길[前途] 이것을 무효(無效)로 함.

(주註)권편(券片)에 기재(記載)한 종단역(終端驛)에서는 몇 시의 수속을 요(要)하지 아니하고 도중(途中) 하차(下車)를 하는 것을 득(得)함.

제14조(條)제3호(號) 및 비고(備考)4를 아래[좌(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3. 창춘역(長春驛)—외국측(外國側) 취급역(取扱驛) 간(間) 운임(運賃)

구간(區間)	경유역(經由驛)	거리(距離)(km)	단위(單位)	운임(運賃)		
				1등(等)	2등(等)	3등(等)

2) 역자: 카를스바트(체코어로는 카를로비바리[Karlovy Vary])는 체코의 도시로, 카를로비바리 주의 주도(州都)이며 면적은 59,10km², 2013년 현재 인구는 50,172명이다. 온천과 카를로비바리 영화제로 유명하다.

				대인(大人)	소아(小兒)	대인	소아	대인	소아
창춘(長春)-치타	하얼빈	1,649	달러(弗)	42,90	19.59	29.70	12.99	18.31	7.87
창춘-이르쿠츠크	하얼빈	2,696	동(同)	50.81	21.57	37.61	14.97	23.58	9.19
창춘-옴스크	하얼빈	5,170	동(同)	67.13	25.65	53.93	19.05	24.46	11.99
창춘-예카테린부르크	하얼빈	6,067	동(同)	73.46	27.23	60.26	20.63	38.68	13.05
창춘-모스크바	하얼빈	7,884	동(同)	87.15	30.65	73.95	24.05	47.81	15.33
창춘-레닌그라드	하얼빈	8,540	동(同)	92.42	31.98	79.22	25.38	51.32	16.21
창춘-하르키우	하얼빈	8.671	동(同)	93.47	32.23	80.27	25.63	52.02	16.38
창춘-하바롭스크	하얼빈 포그라니치나야	1,565	동(同)	33.94	14.45	25.09	10.05	15.77	6.16
창춘-블라고베셴스크	하얼빈 포그라니치나야	2,331	동(同)	39.21	15.77	30.36	11.37	19.28	7.04
창춘-탈린	하얼빈	8,930	동(同)	96.46	33.73	82.07	26.54	53.23	16.99
창춘-리가	하얼빈	8.943	동(同)	98.85	35.10	83.65	27.50	53.62	17.29
창춘-카우나스	하얼빈 리가	9.239	동(同)	100.81	36.03	85.05	28.15	54.64	17.78
창춘-브레스트	하얼빈	8.728	동(同)	94.13	32.56	80.67	25.83	52.28	16.51
창춘-바르샤바	하얼빈	9,191	동(同)	102.07	36.53	85.43	28.21	55.46	18.10
창춘-로즈	하얼빈, 바르샤바	9,331	동(同)	103.83	37.41	86.49	28.74	56.16	18.40
창춘-크자카	하얼빈 리가	9,644	동(同)	110.02	40.64	91.50	31.38	58.74	19.83
창춘-단치히	하얼빈 리가	9,676	동(同)	110.88	41.07	92.10	31.68	59.14	20.03
창춘-포모르스키에	하얼빈 리가	9,742	동(同)	112.04	41.65	92.70	31.98	59.54	20.23
창춘-프라하	하얼빈 바르샤바	9,971	동(同)	112.35	42.17	92.21	31.60	59.98	20.36
창춘-마리앙바드	하얼빈 바르샤바	10,162	동(同)	117.79	44.39	94.87	32.93	61.76	21.25
창춘-카를로비바리	하얼빈 바르샤바	10,161	동(同)	117.63	44.31	94.77	32.88	61.68	21.21
창춘-비엔나	하얼빈 바르샤바	9,889	동(同)	113.73	42.31	92.73	31.86	60.08	20.41
창춘-베를린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바르샤바경유 9.844 리가경유 10.080	동(同)	113.07	42.03	92.33	31.66	59.94	20.34
창춘-함부르크 알토나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바르샤바경유 10,134 리가경유 10,370	동(同)	120.61	45.80	97.57	34.28	63.46	22.10
창춘-쾰른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바르샤바경유 10,421 리가경유 10,657	동(同)	128.19	49.59	102.89	36.94	66.90	23.62
창춘-브뤼셀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바르샤바경유 10,645 리가경유 10,881	동(同)	132.41	51.75	105.93	38.46	68.72	24.78
창춘-리에주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바르샤바경유 10,546 리가 경유 10,782	동(同)	130.91	50.95	104.93	37.96	68.12	24.48
창춘-오스텐트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바르샤바경유 10,670 리가 경유	동(同)	134.11	52.55	107.13	39.06	69.42	25.08

		10,996							
창춘-파리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바르샤바경유 10,913 리가경유 10,149	동(同)	137.61	54.30	109.40	40.24	70.98	25.91
창춘-칼레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바르샤바경유 10,872 리가 경유 11,108	동(同)	136.35	53.67	108,58	39.79	70.49	25.61
창춘-베네치아	하얼빈 바르샤바 비엔나 타르비소	10,557	동(同)	129.39	50.19	103.87	37.43	66.42	23.58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베를린 브렌네로	바르샤바경유 11,109 리가 경유 11,345	동(同)	145.79	58.39	115.05	43.02	74.22	27.48
창춘-로마	하얼빈 바르샤바 비엔나 타르비소	11,199	동(同)	140.13	55.56	111.07	41.03	70.68	25.71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베를린 프렌네로	바르샤바경유 11,608 리가 경유 11,844	동(同)	153.39	62.29	120.29	45.64	77.34	29.04
창춘-밀라노	하얼빈 바르샤바 비엔나 타르비소	10,824	동(同)	134.73	52.86	107.47	39.23	68.56	24.65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베를린 프렌네로	바르샤바경유 11,135 리가 경유 11,371	동(同)	146.33	58.66	115.41	43.20	74.46	27.60
창춘-제노바	하얼빈 바르샤바 비엔나 타르비소	10,974	동(同)	137.17	54.08	109.11	40.05	69.52	25.13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베를린 프렌네로	바르샤바경유 11,285 리가 경유 11,521	동(同)	149.03	60.01	117.21	44.10	75.52	28.13

비고(備考) 4 외국측 금불화(金弗貨) 운임(運賃) 중에는 소비에트철도의 운수교육세(運輸敎育稅), 급행료(急行料) 및 적십자세(赤十字稅)를 포함함.

제18조(條) 여객은 승차권의 사용개시 전 여행을 보류(保留)한 때는 통용기간(通用期間) 내(內) 또는 통용기간 경과(經過) 후(後) 6개월 이내에 한(限)하여 승차권을 환급(還給)하되, 이미 지불한 운임액(運賃額)에서 운수교육세(運輸敎育稅), 적십자세(赤十字稅), 승차권인쇄비(乘車券印刷費),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乘車券委託販賣手數料) 및 환불(還拂)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控除)한 잔액의 환불을 청구(請求)함을 득(得)함.

(주註) 1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란 여행안내업자(旅行案內業者)에게 승차권을 위탁하여 판매시킨 경우, 운수기관으로부터 안내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그 금액은 운수기관에 따라 달라도 대개 운임액(運賃額)의 5푼[分] 이내로 함.

2 환불에 필요한 비용이란 승차권 환불 때 조회(照會) 등에 필요한 통신비(通信費) 기타(其他)를 말함.

제19조 여객은 상이(傷痍), 질병(疾病), 천재지변(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事由)에 의해 도중(途中)에서 여행을 중지(中止)한 경우에 있어서는 통용기간(通用期間) 내(內) 또는 통용기간 경과(經過) 후(後) 6개월 이내(以內)에 한(限)하여 승차권을 환급하되, 이미 지불한 운임액에서 이미 승차한[既乘] 구간(區間)에 대한 상당운임(相當運賃)과 운수교육세, 적십자세, 승차권인쇄비,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 및 환불에 필요한 비용과의 합산액(合算額)을 공제(控除)한 잔액의 환불을 청구함을 득(得)함.

제19조(條)2 분실(紛失)한 승차권에 대하여는 승차권의 재발행(再發行) 및 운임환불(運賃還拂)의 청구(請求)를 함을 부득(不得)함.

제23조(條) 중(中) 제1항(項) 말미(末尾)에「단(但) 용이(容易)하게 수하물차(手荷物車)에 적재(積載)를 득(得)한 것에 한(限)함」을 추가(追加)하고, 제2항(項) 중(中)「이탈리아의 철도」의 다음에「발착(發著)의 경우」를 추가함.

제26조(條) 수하물을 탁송할 때는 여객은 승차권을 정시(呈示)해야 하는 것으로 함.

전항(前項)의 승차권이 베를린(Berlin) 보다 먼 행선지(行先地)의 것인 때는 여객은 그 경로(徑路)를 지정(指定)해야 하는 것으로 함.

연락운임(聯絡運賃)의 정(定)함이 유(有)한 경우에 있어서는 여객은 승차권(乘車券) 면(面)의 발착(發著) 역(驛)·항(港) 간(間) 외, 그 일부 구간(區間)에 대해서도 수하물의 탁송을 함을 득(得)함.

연락운임의 정(定)함이 무(無)한 역(驛)·항(港) 간(間)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當該) 운송(運送)에 관한 지방적(地方的) 운임(運賃) 및 규칙(規則)에 의해 이 취급을 하는 것으로 함.

(주註) 1 베를린(Berlin) 보다 먼 행선지(行先地) 승차권 소지자(所持者)에 대해 그 경로를 지정하는 것은 통관(通關)과 관계(關係)되기 때문임.

2 제4항(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운임 외(外)는 장표(帳表) 기타 모든 당해(當該) 운송에 대해 정(定)한 것을 사용함.

제27조(條) 중(中) 제1항(項)제3호(號), 제2항(項) 및 제3호(號)를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3. 창춘역(長春驛)—외국측(外國側) 취급역(取扱驛)

구 간(區間)	경 유(經由)	거리(距離)	단위(單位)	매 10kg당(當) 운임
창춘—치타	하얼빈	1,649	달러(金弗)	불(弗) 1.60
창춘—이르쿠츠크	하얼빈	2,695	동(同)	2.42
창춘—옴스크	하얼빈	5,170	동(同	3.71
창춘—예카테린부르크	하얼빈	6,067	동(同	4.04
창춘—모스크바	하얼빈	7,884	동(同	4.76
창춘—레닌그라드	하얼빈	8,540	동(同	5.03
창춘—하르키우	하얼빈	8,671	동(同	5.09

창춘–하바롭스크	하얼빈 포그라니치나야	1,565	동(同	1.55
창춘–블라고베셴스크	하얼빈 포라르니치나야	2,331	동(同	2.10
창춘–탈린	하얼빈	8,930	동(同	5.31
창춘–리가	하얼빈	8,943	동(同	5.37
창춘–카우나스	하얼빈 리가	9,239	동(同	5.66
창춘–키예프	하얼빈 리가	9,644	동(同	6.13
창춘–포모르스키에	하얼빈 리가	9,742	동(同	6.20
창춘–단치히	하얼빈 리가	9,676	동(同	6.15
창춘–브레스트	하얼빈	8,728	동(同	5.10
창춘–바르샤바	하얼빈	9,191	동(同	5.41
창춘–로즈	하얼빈 바르샤바	9,331	동(同	5.49
창춘–프라하	하얼빈 바르샤바	9,971	동(同	6.02
창춘–마리앙바드	하얼빈 바르샤바	10,162	동(同	6.23
창춘–카를스바트	하얼빈 바르샤바	10,161	동(同	6.22
창춘–비엔나	하얼빈 바르샤바	9,889	동(同	5.96
창춘–베를린	하얼빈 바르샤바	9,844	동(同	5.87
창춘–베를린	하얼빈 바르샤바	10,080	동(同	6.42
창춘–함부르크 알토나	하얼빈 바르샤바	10,134	동(同	6.15
창춘–함부르크 알토나	하얼빈 리가	10,370	동(同	6.55
창춘–쾰른	하얼빈 바르샤바	10,421	동(同	6.29
창춘–쾰른	하얼빈 리가	10,657	동(同	6.60
창춘–브뤼셀	하얼빈 바르샤바	10,645	동(同	6.51
창춘–브뤼셀	하얼빈 리가	10,881	동(同	6.80
창촌–리에주	하얼빈 바르샤바	10,546	동(同	6.41
창촌–리에주	하얼빈 리가	10,782	동(同	6.70
창춘–오스텐트	하얼빈 바르샤바	10,760	동(同	6.51
창춘–오스텐트	하얼빈 리가	10,996	동(同	6.80
창춘–파리	하얼빈 바르샤바	10,913	동(同	6.73
창춘–파리	하얼빈 리가	11,149	동(同	7.02
창춘–칼레	하얼빈 바르샤바	10,872	동(同	6.63
창춘–칼레	하얼빈	11,108	동(同	6.92

	리가			
창춘–베네치아	하얼빈 바르샤바 비엔나 타르비소	10,557	동(同	6.54
창춘–베네치아	하얼빈 바르샤바 베를린 브레너	11,109	동(同	6.85
창춘–베네치아	하얼빈 리가 베를린 브레너	11,345	동(同	7.14
창춘–로마	하얼빈 바르샤바 비엔나 타르비소	11,199	동(同	6.93
창춘–로마	하얼빈 바르샤바 베를린 브레너	11,608	동(同	7.11
창춘–로마	하얼빈 리가 베를린 브레너	11,844	동(同	7.40
창춘–밀라노	하얼빈 바르샤바 비엔나 타르비소	10,824	동(同	6.76
창춘–밀라노	하얼빈 바르샤바 베를린 브레너	11,135	동(同	6.87
창춘–밀라노	하얼빈 리가 베를린 브레너	11,371	동(同	7.16
창춘–제노바	하얼빈 바르샤바 비엔나 타르비소	10,974	동(同	6.85
창춘–제노바	하얼빈 바르샤바 베를린 브레너	11,285	동(同	6.98
창춘–제노바	하얼빈 리가 베를린 브레너	11,521	동(同	7.27

브레스트까지 수하물(手荷物)에 대한 외국측(外國側) 운임(運賃)의 최저액(最低額)은 아래 [左]와 같이 함.

구 간	경유역	단위	10kg 이하의 경우	20kg 이하의 경우	30kg 이하의 경우
창춘–브레스트	하얼빈	달러 [金弗]	달러(弗) 4.87	달러(弗) 9.70	달러(弗) 14.53

수하물(手荷物)의 탁송(託送)을 할 때는 여객은 제1항(項)의 운임(運賃) 외 아래[左]의 금액(金額)을 발역(發驛)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함.

가 일본측(日本側) 출발[發]의 경우

1. 파리 및 칼레 행(行)의 수하물(手荷物)에 대하여는 인지세(印紙稅)로서 수하물증서(手荷物證書) 1통(通)당(當) 1센트(cent·仙)
2. 모스크바 통과(通過)의 수하물(手荷物)에 대하여는 동지(同地)에서의 소운송료(小運送料)로서 1kg당(當) 0.006불(弗)

나 외국측(外國側) 출발[發]의 경우

1. 파리 및 칼레 출발의 수하물(手荷物)에 대하여는 1.70프랑(franc. 내역(內譯): 1.05프랑은 등기료[登記料], 0.25프랑은 인지세[印紙稅], 0.40프랑은 통관취급수수료[通關取扱手數料])
2. 로즈, 바르샤바, 브레스트, 호이니체, 단치히 및 키예프 출발[發]의 수하물(手荷物)에 대하여는 인지세(印紙稅)로서 수하물증서(手荷物證書) 1통(通)당(當) 2센트(cent·仙)
3. 프라하, 카를로비바리, 마리앙바드 출발[出]의 수하물(手荷物)에 대하여는 인지세(印紙稅)로서 수하물증서(手荷物證書) 1통(通)당(當) 2센트(cent·仙)
4. 비엔나 출발[發]의 수하물(手荷物)에 대하여는 인지세(印紙稅)로서 수하물 1개(箇)당(當) 2센트(cent·仙)
5. 리에주, 브리셀, 오스텐트 출발[發] 수하물(手荷物)에 대하여는 취급수수료(取扱手數料)로서 1탁송(託送)마다 1.50 벨기에 프랑(franc)

제28조(條) 중(中) 「지불(支拂)하는 것을 요(要)함」을 「지불(支拂)하여 수하물(手荷物)을 보험(保險)에 가입하는 것을 득(得)함」으로 개정(改正)함.

제30조(條) 중(中) 마호(號)를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마 표기가격(表記價格: 소비에트국유철도선 내(內) 운송에 대하여 수하물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限]함)

제43조(條)제1항(項) 중(中) 「도착[著] 운수기관(運輸機關)을 매개(媒介)하여」의 다음에 「승차권(乘車券)의 통용기간(通用期間) 경과(經過) 6개월(箇月) 이내(以內)에」를 추가(追加)함.

제47조(條)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에 있어서는 당분간(當分間) 하기[左記] 각(各)역(驛)에 대하여는 승차권(乘車券)의 발매(發賣) 및 수하물(手荷物)의 탁송(託送)을 하지 아니함.

폴란드국유철도(國有鐵道)

로즈 하얼빈, 바르샤바 경유(經由)의 경우

브레스트 하얼빈 경유(經由)의 경우

호이니체

케스

단치히 하얼빈, 리가 경유(經由)의 경우

독일국유철도회사(國有鐵道會社)

쾰른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경유(經由)의 경우

벨기에철도(鐵道)

브리셀

리에주

오스텐트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경유(經由)의 경우

프랑스북철도회사(北鐵道會社)

파리

칼레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경유(經由)의 경우

체코슬로바키아국유철도(國有鐵道)

카를스바트(Karlsbad)

마리앙바드 하얼빈, 바르샤바 경유(經由)의 경우

이탈리아국유철도(國有鐵道)

로마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베를린 경유(經由)의 경우

제노바

밀라노 하얼빈, 바르샤바, 비엔나 경유(經由)의 경우

베네치아 하얼빈, 바르샤바 또는 리가, 베를린 경유(經由)의 경우